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관광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「관광진흥법」의 시행을 위한 사항*을 반영하려는 것임

* 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

3. 주요내용

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요건, 지정·취소시 관보 고시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(안 제64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: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의3(관광개발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
 2. 문화관광 자원의 이용·개발·보전에 관한 조사·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거나,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64조의3(관광개발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</u> <u>2. 문화관광 자원의 이용·개발·보전에 관한 조사·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전담조직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</u> <u>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</u> <u>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거나,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49